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6956

제안연월일: 2024. 12.

제 안 자: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 명	의안 번호	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	
	2200536	고동진의원 등 108인	'24.6.17.	상정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8.26.)
				7.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'24.8.27.)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	2200586	서지영의원 등 13인	'24.6.18.	상정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8.26.)
				소위 심사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'24.8.27.)
				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241120.)
	9901000	강유정의원	'947 10	상정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8.26.)
	2201966	등 12인	'24.7.18.	소위 심사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241120.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 11. 25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,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,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·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부가 메타버스·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.

한편, 게임·영상·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음.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,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,2 02건, 2024년에는 총 15,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정부가 창작·유통·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인 '콘텐츠'의 범위에 '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'가 포함됨을 명시함(안 제9조제1항).
- 나.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함(안 제29조, 제29조의 2 신설).
- 다.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,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(안 제33조제3항, 제33조의2 신설)
- 라.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의3 신설).
- 마.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의4 신설).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콘텐츠"를 "콘텐츠(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"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1.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2. 조정위원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.
-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9조의2(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 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2. 판사 ·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3.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
- 5. 4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사람
-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의3(위원의 신분보장)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.
 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- 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제29조의4(조정부)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있다.
 -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 -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제3항 본문 중 "신청은"을 "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신청이"를 "의뢰 또는 신청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,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
 - 2.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
 - 3.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
- 제33조제3항 중 "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

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"을 "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 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4 항 중 "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"을 "조정조서를 작성 한 경우 조정조서는"으로 한다.

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합의권고)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제33조의3(직권조정결정)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이하 "직권조정결정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1.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 유 없이 거부한 경우
 - 2.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
 - 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 (主文)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

하여야 하며,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.

-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33조의4(분쟁조정의 특례)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국가·지 방자치단체·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 흥원·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 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(이하 "집단 분쟁조정"이라 한다)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

- 2.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
- 3.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
-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 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 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,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.
- 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

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"조정위원회는"을 "조정이"로, "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"를 "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"로, "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"를 "중일 때에는 수소법원(受訴法院)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9조 중 "제29조제6항에"를 "제29조제3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당시 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- 제4조(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.
- 제6조(조정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9조(콘텐츠제작의 활성화) ①	제9조(콘텐츠제작의 활성화) ①			
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				
형태의 <u>콘텐츠</u> 가 창작·유통·	콘텐츠(새로운 기술을 활			
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	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)			
여야 하며, 콘텐츠제작자의 창				
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				
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	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	
제29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	제29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	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조정위원회는 <u>위원장 1명을</u>	② <u>다음 각 호의</u>			
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	<u>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</u> .			
위원으로 구성한다.				
<u><신 설></u>	1.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			
	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			
<u><신 설></u>	2. 조정위원회의 의사(議事)에			
	<u>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·</u>			
	폐지에 관한 사항			
<u><신 설></u>	3.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			
	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			
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	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<u>하기 위하여 「문화산업진흥</u>			
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	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			

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3.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
- 4.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 에 소속된 사람
- 5. 4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 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 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
-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 <삭 제> 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 選)한다.
-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 <삭 제> 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

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.

임할 수 있다.

8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<u><신</u> 설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29조의2(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- 3.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 에 소속된 사람
- 5. 4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 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 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
-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 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 選)한다.
-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 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.
-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3(위원의 신분보장) 조정

<신 설>

<신 설>

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 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 한다.

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경우
- 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의4(조정부)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.
 -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 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.
 -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・의결한 것으로 본다.
 -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

- 제30조(분쟁의 조정) ①·② (생략)
 -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. 다만, 그 신청이 취하되거 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 - 1.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 를 작성한 때
 - 2.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

⑤・⑥ (생략)

운영	등에	필요한	사항은	대통
렁렁,	으로 >	정한다.		

제30조(분쟁의 조정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
3)
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
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
<u>뢰 또는 신청은</u>
의뢰 또
<u>는 신청이</u>

- (4) ------
- 1.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, 제

 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

 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
- 2.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
- 3.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
- 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조정의 효력) ①・② (생 략)

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 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 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 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제33조(조정의 효력) ①・② (현 행과 같음)

(3) -----

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 -----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 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 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

> 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 정<u>조서를</u>-----.

④ ------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-----

제33조의2(합의권고) ① 조정위원 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 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.

제33조의3(직권조정결정) ① 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(이하 "직권조정결정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- 1.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 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 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
- 2.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
- ②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(主文)과 결정 이유를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, 그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정은 효 력을 상실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

<신 <u>설></u>

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 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33조의4(분쟁조정의 특례)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국 가 · 지방자치단체 · 「문화산업 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· 이용자 또 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 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 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(이 하 "집단분쟁조정"이라 한다)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 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 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

- 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 다.
- 1.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<u>못한</u> 사건
- 2.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
- 3.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 건
-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수 있다.
-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 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 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 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

다.

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수있다.

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, 소를 제기한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제외한다.

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 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 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며,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제34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(생 략)

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 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 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 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 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

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| ② 조정이-----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 기되어 소송이----중일 때에 는 수소법원(受訴法院)은 조정 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 지할 수 있다.
 -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 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-----제 29조제3항에-----